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
폐지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소 방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양 권 석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6일 장주식의원 등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에 필요한 교육훈련 관련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, 근거조문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(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설치)의 삭제로 폐지하려는 것임.

3. 검토의견

이 폐지 조례안은 제정 근거조문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(2008.12.31) 삭제와 1995년 위원회 구성이후 개최실적이 전무하여 「충청북도 위원회 정비계획」에 의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 협의회운영 조례를 폐지에 이견이 없음.